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8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김혜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50명)

## 1. 제안이유

-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하여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안 제4조 1항).
- 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명시(안 제4조 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식”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식의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조(조식 운영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3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